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동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·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그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
 - ▷ 2004. 6. 30 ⇒ 2005. 6. 30(안 부칙 조례 제494호 제2조제1항)

3.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
- 읍면동 기증전환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 통보
 - ▷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- 1425(2004. 6. 29)호
 - ▷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- 4345(2004. 6. 29)호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에 의거 2004. 6. 30에서 2005. 6. 30까지 연장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 <2000.9.30 조례 제494호> 제1조 (생략) 제2조(한시기구) ①제5조제1항의 주민 자치과의 존속기간은 <u>2004년 6월 30일</u> <u>까지</u> 로 한다. ② (생략)	부 칙 <2000.9.30 조례 제494호> 제1조 (현행과 같음) 제2조(한시기구) ① ----- ----- <u>2005년 6월 30일</u> <u>까지</u> ----. ② (현행과 같음)